환경분쟁 해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쟁 해결]

『환경분쟁 해결』 콘텐츠에서는 환경분쟁의 유형과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환경분쟁 조정제도, 건강피해조사 및 피해구제급여 신청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환경분쟁 해결 1
1. 환경분쟁 이해하기 4
1.1. 환경분쟁의 해결 방법 4
1.1.1.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구제제도 등 4
2. 환경분쟁 조정(調整) 알아보기 9
2.1. 환경분쟁 조정 9
2.1.1. 환경분쟁 조정 신청 대상 등 9
2.1.2.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등 10
2.2. 환경분쟁 조정의 종류 12
2.2.1. 알선(斡旋) 13
2.2.2. 조정(調停) 14
2.2.3. 재정(裁定) 17
2.2.4. 중재(仲裁) 20
2.2.5.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 21
3. 건강피해조사 알아보기 24
3.1. 건강피해조사의 종류 24
3.1.1.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24
3.1.2.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24
4. 피해구제 알아보기 27
4.1. 석면피해구제 27
4.1.1. 석면피해구제의 신청 27
4.2. 환경오염피해구제 29
4.2.1.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신청 29
4.3. 살생물제품피해구제 31
4.3.1. 살생물제품피해구제의 신청 31

1. 환경분쟁 이해하기

1.1. 환경분쟁의 해결 방법

1.1.1.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구제제도 등

환경분쟁의 개념

"환경분쟁"이란?

▪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계·시공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폐수관로를 포함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 그 밖에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저감(低減)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시설·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 수위의 변화, 화학물질 유출·노출, 살생물제품 노출, 그 밖에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를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참조).

환경분쟁조정(調整)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해결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www.ehtis.or.kr)-피해구제제도안내-환경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안내 참조].

※ 조정(調整)의 종류

구분		정의	처리기간
중재(仲裁)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9월
재정(裁定)	책임재정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9월
	원인재정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만 판단하는 절차	6월
조정(調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 및 합의 불성립시 조정결정을 하는 절차	9월
알선(斡旋)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3월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 홈페이지(www.ehtis.or.kr)>

※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2. 환경분쟁 조정(調整)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피해조사

"건강피해조사"란?

▪ "건강피해조사"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경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조사를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 홈페이지(www.ehtis.or.kr) 원스톱 서비스 신청-건강피해조사 청원 참조].

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②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③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

건강피해조사의 요청

▪ 건강피해조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피해조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 홈페이지(ehtis.or.kr) 원스톱 서비스 신청-나에게 맞는 피해구제 찾기 참조].

① 건강피해조사 청원: 청원 24(www.cheongwon.go.kr)를 통한 피해조사 요청

② 석면 건강영향조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등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요청

※ 건강피해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3. 건강피해조사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제도

"석면피해구제제도"란?

▪ "석면피해구제제도"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제도입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참조 및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 홈페이지(www.ehtis.or.kr)-피해구제제도안내-석면피해구제제도-석면피해구제제도란 참조].

※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다음의 물질을 말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2조제1호 및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조)

- 악티노라이트석면
- 안소필라이트석면
- 트레모라이트석면
- 청석면
- 갈석면
- 석면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란?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란 원인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배상 능력이 없어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참조 및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 홈페이지(www.ehtis.or.kr) 원스톱 서비스 신청-환경오염피해 참조].

▪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 피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환경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참조).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무자력인 경우
-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살생물제품피해구제제도"란?

▪ "살생물제품피해구제제도"란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살생물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건강상의 피해를 원인자로부터 배상이 불가하거나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참조 및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

홈페이지(www.ehtis.or.kr)-피해구제제도안내-살생물제품 피해구제-살생물 피해구제란 참조].

※ “살생물제(殺生物劑)”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함)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호).

·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 “살생물처리제품”이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4. 피해구제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쟁송에 따른 해결

민사소송

▪ 민사소송에는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 환경침해의 방지를 청구하는 유지청구가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손해배상청구입니다(「민법」 제750조).

▹ 유지청구(留止請求)란 사전적 피해구제의 방법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214조 및 제217조를 근거로 하여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환경침해발생시설의 가동 중지, 소음발생 행위의 금지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및 제217조 참조).

Q.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제도와 민사소송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제도와 민사소송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제도	민사소송
적은 비용	상당한 비용(변호사 보수 등)
피해사실 입증책임 완화	피해사실의 인과관계를 직접 인증해야 함
간단한 절차	복잡한 절차
비교적 짧은 시간 소모	긴 시간 소모

<출처: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 자가진단 노트』, 22쪽 참조>

행정심판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환경피해를 입은 자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입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및 제3조제1항 참조).

행정소송

▪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 부작위로 인해 환경피해를 입은 자가 법원에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입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및 제3조제1호).

국가배상청구

▪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2. 환경분쟁 조정(調整) 알아보기

2.1. 환경분쟁 조정

2.1.1. 환경분쟁 조정 신청 대상 등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환경피해 관련 다툼

▪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① 대기오염, ② 수질오염, ③ 토양오염, ④ 해양오염, ⑤ 소음·진동, ⑥ 악취, ⑦ 자연생태계 파괴, ⑧ 일조 방해, ⑨ 통풍 방해, ⑩ 조망 저해, ⑪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⑫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⑬ 하천수위의 변화 및 ⑭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 제외)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참조).

주요 분쟁사건

	매연, 먼지로 인한 재산(화훼) 피해분쟁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분쟁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농작물) 피해 분쟁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재산(어류) 피해 분쟁
	악취, 해충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www.ehtis.or.kr)-피해구제제도안내-환경분쟁조정-주요분쟁사건패턴>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한 다툼

▪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참조).

①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② 하수도

③ 완충저류시설

④ 공공폐수처리시설

⑤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⑥ 재활용시설

⑦ 폐기물처리시설

⑧ 수도시설

⑨ 그 밖에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저감(低減)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시설·기계·기구 및 설비

분쟁조정 사건처리절차

사건처리절차

▪ 환경분쟁조정 사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www.ehtis.or.kr)-피해구제제도안내-환경분쟁조정-사건처리절차].



2.1.2.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등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란?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환경분쟁 및 피해구제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전단 및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www.ecc.me.go.kr)-위원회소개 참조].

▪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함)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후단 참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사무 등

위원회의 사무

▪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

1. 건강피해조사

2. 환경분쟁의 조정.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분쟁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함

①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

②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으로 인한 경우

③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

④ 화학물질 유출·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또는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한 경우

⑤ 살생물제품의 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피해(후유증을 포함)가 발생한 경우

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재심사의 심의·결정·재결 등

4.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5. 환경피해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6.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재정적·기술적 지원

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관할

▪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위원회 구분	관할
중앙위원회	1. 건강피해조사(다만,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다음에 한정함) ①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④ 지방위원회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지방위원회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환경분쟁의 조정 사무 중 다음의 사항 ① 환경분쟁의 재정(⑤에 따른 재정은 제외) 및 중재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분쟁의 조정 ③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환경분쟁의 조정 ④ 직권조정(職權調停) ⑤ 원인재정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환경분쟁의 조정 ⑥ 그 밖에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환경분쟁의 조정
	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재심사의 심의·결정·재결 등
지방위원회	1.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위 중앙위원회 2.의 ②부터 ⑥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를 관할(다만, 중앙위원회 2.의 ①은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화학물질 유출·노출, 살생물제품 노출로 인한 분쟁은 제외한 것으로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만 해당함)
	2. 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
	3.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 사무 중 위 중앙위원회 관할 1.에 관한 건강피해조사 사무 외의 관할지역 사무

※ 그 밖에 위원회가 수행하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2.2. 환경분쟁 조정의 종류

2.2.1. 알선(斡旋)

알선의 개념

"알선"이란?

▪ "알선"이란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서비스(www.ehtis.or.kr)-피해구제제도안내-환경분쟁조정-조정-조정의 종류?].

알선 절차

알선 신청서 작성

▪ 알선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제6항,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호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함)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장소
- 환경분쟁의 경과
- 알선을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
- 그 밖의 참고자료

알선 개시

▪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3명 이내의 위원이 알선위원이 되고, 알선위원은 알선 신청을 받았을 때에 지체 없이 알선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및 제43조제1항 참조).

▪ 또한 알선위원은 당사자 양쪽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알선 처리기간

▪ 위원회는 당사자의 알선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개월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본문 참조).

- 당사자등이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등 인과관계를 증명하거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신청 각하

▪ 위원회는 알선 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고, 다음의 경우에 알선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참조).

- 신청인이 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흠을 바로 잡을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환경분쟁의 경우

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 당사자등은 위원회의 중간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참조).

▪ 위원회는 위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棄却)하여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알선의 중단

▪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환경분쟁 해결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 또한, 알선 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알선의 종결

▪ 알선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및 알선위원이 기명·날인해야 하고, 담당 심사관은 이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73조 및 별지 제5호서 참조).

알선의 효력

효력

▪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됩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www.ehtis.or.kr)-피해구제제도안내-환경분쟁조정-조정-조정의 효력].

2.2.2. 조정(調停)

조정의 개념

"조정"이란?

▪ "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은 당사자의 상호양보에 의하여 사건의 타당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입니다[법제처, 법령용어검색(www.klri.re.kr) 참조].

> ※ 직권조정
>
>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 조정과 관련한 절차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조정 절차

조정 신청서 작성

▪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제6항,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호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함)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장소
- 환경분쟁의 경과
- 조정을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
- 그 밖의 참고자료

조정 개시 등

▪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며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및 제47조제1항 참조).

▪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장,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조정 처리기간

▪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9개월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본문 참조).

- 당사자등이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등 인과관계를 증명하거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신청 각하

▪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고, 다음의 경우에 조정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참조).

- 조정 신청인이 조정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흠을 바로 잡을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환경분쟁의 경우

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 당사자등은 조정위원회의 중간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 조정위원회는 위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棄却)하여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조정의 성립

▪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위원회가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참조).

조정 결정

▪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 조정결정은 문서로써 해야 하며, 이 경우 조정결정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조정위원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등의 주소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3. 조정 내용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조정결정한 날짜

▪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결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하며, 당사자는 조정결정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및 제4항 참조).

> ※ 조정위원회는 해당 환경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참조).

조정의 종결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되며,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조정은 종결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조정의 효력

효력

▪당사자 간에 합의에 따라 성립된 조정과 이의신청이 없는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이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참조).

2.2.3. 재정(裁定)

재정의 개념

“재정”이란?

▪“재정”이란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edc.seoul.go.kr)-제도안내 참조].

- 원인재정: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그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
- 책임재정: 환경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정

재정 절차

재정 신청서 작성

▪재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제6항,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호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함)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장소
- 환경분쟁의 경과
- 재정을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

√ 원인재정의 경우 : 피해사실 또는 예상 피해사실

√ 책임재정의 경우 : 피해금액 또는 예상 피해금액

- 그 밖의 참고자료

재정 개시

▪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하며, 재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및 제57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정은 다음의 각 위원회에서 재정을 개시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단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참조).

구분	내용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의 재정 사건 환경피해로 인하여 5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환경분쟁 사건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환경분쟁 사건 3. 환경피해 중 건강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한 조정가액이 20억원 이상인 환경분쟁 사건 4. 그 밖에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환경분쟁 사건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다음의 경미한 재정 사건 중앙위원회의 경우: 조정가액이 2억원 이하인 환경분쟁 사건 지방위원회의 경우: 조정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환경분쟁 사건

재정 처리기간

▪ 재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재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 원인재정의 경우: 6개월
- 책임재정의 경우: 9개월

▪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기간을 연장(책임재정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 당사자등이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등 인과관계를 증명하거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신청 각하

▪ 재정위원회는 재정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고, 다음의 경우에 재정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참조).

- 재정 신청인이 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흠을 바로 잡을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환경분쟁의 경우

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 당사자등은 재정위원회의 중간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 위원회는 위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棄却)하여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재정

- 재정은 문서로써 해야 하며, 재정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등의 주소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3. 주문(主文)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재정한 날짜

- 위의 5.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

-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 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해야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

재정신청의 철회

- 재정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중재신청이 있으면 그 재정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재정절차의 중지

-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조사절차가 진행중이고, 그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재정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결정으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36조).

재정의 효력

효력

-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책임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책임재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 재정위원회가 원인재정을 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알선, 조정, 책임재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 재정위원회가 책임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책임재정 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제외)이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

2.2.4. 중재(仲裁)

중재의 개념

"중재"란?

▪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중재법」 제3조제1호).

> ※ 중재와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

중재 절차

중재 신청서 작성

▪ 중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제6항,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호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함)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장소
- 환경분쟁의 경과
- 중재를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
  - 피해금액 또는 예상 피해금액
  - 중재를 통하여 환경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 사실
- 중재위원회의 위원 중 당사자가 합의한 위원의 명단(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만 한함)
- 그 밖의 참고자료

중재 개시

▪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함)에서 하며,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재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및 제68조제1항 참조).

중재 처리기간

▪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중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9개월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본문 참조).

- 당사자등이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등 인과관계를 증명하거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신청 각하

▪ 중재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중재신청을 각하(却下)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참조).

- 알선 신청인이 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흠을 바로 잡을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환경분쟁의 경우

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 당사자등은 중재위원회의 중간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 중재위원회는 위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棄却)하여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중재의 효력

효력

▪ 중재는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중재법」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2.5.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개념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이란?

▪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이란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다수(多數)인 환경분쟁을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장제1절부터 제5절까지 준용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 절차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 신청

▪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

▪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은 다음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3. 피신청인이 될 사람의 주소 및 성명
4.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의 범위
5.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6. 환경분쟁 조정신청의 취지 및 원인

허가 요건 및 결정

▪ 위원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위에 따른 허가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1.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분쟁을 청구원인으로 할 것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3.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4.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이 동의할 것
5.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 위원회는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의 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서에 조정신청 사항을 적어야 하며, 허가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제2항).

▪ 위원회가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의 허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때에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3항).

공고 등

▪ 위원회는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신청 후 15일 이내에 공고하고, 그 공고안을 그 환경분쟁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3. 구성원의 범위 및 구성원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4. 신청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5. 사건번호 및 사건명

6. 참가신청의 방법 및 기간과 참가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손해배상금의 배분 등

▪ 대표당사자가 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배분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그 배분계획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 손해배상금의 배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및 제85조).

1. 손해배상금을 받을 사람 및 1명당 채권액의 상한

2.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전의 총액

3. 공제항목 및 그 금액(조정절차의 수행에 든 비용 및 배분에 드는 비용)

4.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

5. 배분기준

6. 지급 신청기간,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7. 채권의 확인방법에 관한 사항

8. 배분금을 받는 기간, 받을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배분기준

▪ 손해배상금은 재정의 이유 또는 조정조서(調停調書)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또한 확인된 채권의 총액이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채권의 가액(價額)에 비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의 효력 등

효력

▪ 조정의 효력은 대표당사자와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에 참가를 신청한 사람에게만 미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동일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금지

▪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에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신청원인 및 신청취지상 동일한 환경분쟁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3. 건강피해조사 알아보기

3.1. 건강피해조사의 종류

3.1.1.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위원장 결정에 따른 조사

건강피해등 조사 실시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이 경우 위원회는 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참조).

- 중앙위원회: 중앙건강피해조사반
- 지방위원회: 지역건강피해조사반

건강피해등 조사 시 협조

▪ 환경피해 관련사업자(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피해의 발생과 관련있는 사업자를 말함)는 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참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 또한 누구든지 위원회가 건강피해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고,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재정적·기술적 지원

▪ 국가는 건강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 및 환경피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3.1.2.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청원에 따른 조사

건강피해등 조사 실시

▪ 국민은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해당 원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전단).

▪ 위원회는 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하며, 심의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 다만,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심의와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참조).

> ※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르고, 조사의 절차와 방법 및 환경피해 관련사업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

청원의 불수리

▪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을 수 있고, 청원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청원지역에 대한 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가 실시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항으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 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사인 간의 권리관계 확정 등 청원취지가 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 청원인이 청원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건강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단순 건의 또는 진정

※ 청원 처리 절차



<출처: 청원 24(www.cheongwon.go.kr)-청원안내-청원 처리 절차>

재정적·기술적 지원

▪ 국가는 건강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 및 환경피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4. 피해구제 알아보기

4.1. 석면피해구제

4.1.1. 석면피해구제의 신청

피해구제급여의 종류

구제급여의 종류

▪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5조 참조).

- 요양급여
- 요양생활수당
- 장례비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 구제급여조정금

피해구제급여 지급 절차

석면피해인정신청

▪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함)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받아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 참조).

▪ 이에 관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참조)

①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청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

③ 위원회는 청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

▼

④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리

구제급여 지급 신청

▪ 구제급여 지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 및 제17조 참조).

①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피인정자"라 함)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

▼

② 위원회는 ①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에 관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다만,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음)

▼

③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 피인정자 및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④ 위원회가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지급

※ 그 밖에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www.ehtis.or.kr)-피해구제제도안내-석면피해구제제도-구제급여종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 지급 제한

▪ 위원회는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9조제1항).

▪ 위원회는 위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 및 피인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환석면피해구제법」 제19조제2항).

※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필요한 내용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 재심사 청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함)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5조제1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석면피해인정에 관한 사항
-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 징수금에 관한 사항

▪ 위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5조제2항).

> ※ 그 밖에 재심사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20조).

> ※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www.ehtis.or.kr)-피해구제제도안내-석면피해구제제도-구제급여종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환경오염피해구제

4.2.1.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신청

피해구제급여의 종류

구제급여의 종류

▪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참조).

- 의료비
- 요양생활수당
- 장의비
- 유족보상비
- 재산피해보상비

피해구제급여 지급 절차

구제급여 지급 대상

▪ 피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함)은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7조 참조).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무자력인 경우
-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구제급여 지급 신청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 참조).

① 위원회에 구제급여 지급 신청

▼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신청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보완제출한 날을 말함)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등의 구제급여 지급요건의 적합 여부를 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함)하여 그 결과를 피해자등 및 구제급여 지급 위탁기관에 통지(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연장)

▼

③-1) 예비조사 결과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등의 선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구제급여 일부 선지급 결정	③-2)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피해자등이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내용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 결과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 피해자등 및 구제급여 지급 위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함(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연장)

▼

④ 구제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연장)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6조의2 및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www.ehtis.or.kr)-피해구제제도안내-환경오염 피해구제-피해구제의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 지급 제한

▪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또한 구제급여 대상자의 해당 질병이 나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 ※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필요한 내용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 재심사 청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함)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예비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 구제급여가 잘못 지급되거나 피해자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환수금에 관한 사항

▪ 위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합니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 ※ 그 밖에 재심사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거나 구제급여 심의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4조 참조).

- 피해자나 그 유족이 해당 환경오염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피해보상이나 구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 구제급여가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4.3. 살생물제품피해구제

4.3.1. 살생물제품피해구제의 신청

피해구제급여의 종류

구제급여의 종류

▪ 살생물제품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 진료비
- 장애일시보상금
- 사망일시보상금
- 장례비

피해구제급여 지급 절차

구제급여 지급 대상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 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 참조).

-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무자력인 경우
-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살생물제품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살생물제품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아 장래에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제급여 지급 신청

▪ 살생물제품 피해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 참조).

① 위원회에 구제급여 지급 신청

▼

②-1) 지급 신청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각하

②-2)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감정

▼

③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 피해등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연장)

※ 그 밖에 구제급여 신청자의 피해등급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및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필요한 내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 환수

▪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9제1항).

▹ 이 경우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지체 없이 구제급여 대상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9제2항).

▪ 또한 구제급여 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 살생물제품피해구제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9제3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 그 밖에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중단 등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 재심사 청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3제1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각하에 관한 사항
-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구제급여의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

▪ 위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3제2항).

> ※ 그 밖에 재심사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0제1항).

▪ 또한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한 제조·수입업자는 지급된 구제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0제2항).

> ※ 그 밖에 살생물제품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